



서울고등법원

1999. 7. 15. 판결선고	인
1999. 7. 15. 원본영수	

제 8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98나52003	손해배상(기)
원고,피항소인	A	
피고, 항소인	1. B 2. C	
변 론 종 결	1999. 6. 24.	
제 1 심 판결	서울지방법원 1998. 9. 2. 선고 98가합8290 판결	
주 문	1.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,000,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8. 2. 12.부터, 피고 C은 1998. 2. 13.부터 각 1999. 7. 15.까지는 연 5푼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	



금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,000,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분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이 유 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‘1.항’ 및 ‘2.의 가.항’의 해당 설시 부분 중 ‘1.항’의 첫머리 증거설시 부분에 채용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호 중,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열거하는 외에는 위 해당 설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손해배상의 범위

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



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, 그 위자료의 수액은, 피고들이 피고 C의 아버지로서 ‘월간 D’의 발행인이던 위 망 E이 원고의 운전사인 위 F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 F의 진술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‘월간 D’에 이 사건 기사 등을 게재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를 요청하기에 이른 점, 이 사건 기사 등의 비방성의 강도,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, ‘월간 D’의 발행부수 및 배포 범위, 원고의 성별, 나이,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금 10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, 피고 B은 1998. 2. 12.부터, 피고 C은 1998. 2. 13.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9. 7. 15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3-08-19

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,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
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1999. 7. 15.

재판장 판사 김 재 진 _____

판사 박 순 성 _____

판사 최 규 홍 _____